홍콩지사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2년 10월)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홍콩

□ **한국 포함 10개 국가의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10월 기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2년 10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10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국가	지역	내용	비고
캐나다	Smoky Lake County of Alberta Province, Rural Municipality of Laird No. 404 of Saskatchewan Province, Rural Municipality of Ste. Anne, Bifrost-Riverton and Cartier of Province of Manitoba, Beaver County and Municipal District of Taber of Alberta Province, Rural Municipality of Britannia No. 502 of Saskatchewan Province, Rural Municipality of Lumsden No.189, Rural Municipality of Redburn No.130, Les Jardins-de-Napierville Regional County Municipality of Quebec Provinc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캐나다 냉동가금육 수입량 : 60톤 가금류 알 : 없음
미국	Roseau County of the State of Minnesota, Gooding County of the State of Idaho, Ransom County of the State of North Dakota, Racine County and Dunn County of the State of Wisconsin, York County of the State of Pennsylvania, Stanislaus County, Monterey County and Del Norte County of the State of California, York County of the State of Nebraska, Madison County of the State of Arkansas, Neosho County of the State of Kansa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미국 냉동가금육 수입량 : 7,360톤 가금류 알 : 201.48백만개
영국	Selby District of North Yorkshire County, Pembrokeshire County of Wales, Vale of White Horse District of Oxfordshire County, Isle of Lewis of Scotland, North Kesteven District of Lincolnshire County, North Norfolk District of Norfolk County, Braintree District of Essex Coun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영국 냉동가금육 수입량 : 880톤 가금류 알 : 16만개
프랑스	Réunion Department, Sarthe Departmen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프랑스 냉동가금육 수입량 : 540톤 가금류 알 : 2.5만개
남아프리카공화국	Harry Gwala District Municipality of KwaZulu-Natal Province, edibeng District Municipality of Gauteng Provinc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남아프리카공화국 냉동가금육 수입량 : 없음 가금류 알 : 없음

포르투갈	Lisboa Distric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포르투갈 냉동가금육 수입량 : 없음 가금류 알 : 없음
이탈리아	Verona Province of Veneto Region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이탈리아 냉동가금육 수입량 : 80톤 가금류 알 : 없음
네덜란드	Province of Drenthe, Province of Zuid-Hollan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네덜란드 냉동가금육 수입량 : 50톤 가금류 알 : 없음
벨기에	West-Vlaanderen Province, Limburg Provinc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벨기에 냉동가금육 수입량 : 0.003톤 가금류 알 : 없음
한국	경상북도 예천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2년 6월까지) 對 한국 냉동가금육 수입량 : 0.04톤 가금류 알 : 254만개

2. 대만

□ 개정 공고 「잔류농약허용기준 제3조 부표 1의 초안 수정」 예고 (10.05)

○ **공고 일자** : 2022년 10월 5일

○ **개정 근거** : 행정소송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

○ **주요 내용**

- 식용작물의 잔류농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류농약이 안전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을 제조, 가공, 준비,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선물 또는 공개 전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동법 제15조 2항에 규정된 잔류 농약의 안전한 허용 기준은 중앙주관당국과 협의하여 관계당국이 결정함. Afidopyropen을 포함한 19개 농약의 107개 잔류물 허용치를 추가 및 수정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제3조 부표 1에 대한 수정이 예고됨.

  1. 수정주체: 보건복지부
  2. 수정내용: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 제2항
     - 추가 및 수정 Afidopyropen을 포함한 19개 농약의 107개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허용기준 제3조 부표-1의 초안 수정」 예고 ('22.10. 05 >

- 개정공고「전류농약허용기준 제3조 부표-1의 초안 수정」예고
  預告修正「農藥殘留容許量標準」第三條附表一草案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8268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홍콩

□ 8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9.30) * 9월 보고서는 10월 31일 발표 예정

○ 2022년 8월, 약 7,100개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례 발생

위반 사유	건수	샘플 종류
금속 오염물 함량 초과	3건	킹크랩 1종, 건 포르치니버섯 2종
방부제 함량 초과	2건	건 버섯 1종, 포장된 음료 1종
대장균 “식품 내 미생물 함량 지침”에 함량 초과	1건	식용 얼음 1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	2건	셀러리 1종, 망고 1종
살모넬라균 함유	1건	방어회 1종
이산화황 함유	1건	생 쇠고기 1종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를 위해 약 1,800개, 화학적 테스트를 위해 약 5,300개 샘플을 수집・시험함

- 미생물 테스트는 병원균 및 위생지표를 다루며, 화학 테스트에는 잔류 농약, 방부제, 금속 오염, 식용색소, 동물성 의약품 잔류물 등이 있음
- 8월에 시행된 시험에 대한 샘플의 품목별 수는 채소 및 과일 2,500개, 곡물 및 곡물 제품 500개, 육류・가금류 및 가공제품 600개, 유제품 및 냉동 당과 제품 1,400개, 수산물 및 가공식품 800개, 음료・베이커리류 및 스낵 1,300개임

□ 9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9.24)

○ 영양 성분 표기

-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 2022년 9월, 30개의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없음

○ 알레르겐 표기

- 위반사례 없음.

2. 대만

□ 개정 공고 "천연 식용 색소 위생기준" 수정 예고 (10.12)

○ **공고 일자** : 2022년 10월 12일

○ **개정 근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7조

○ **주요 내용**

천연 식용색소 항목을 통합하고 특정 사양 관리를 강화하며 조항의 설명을 명확히하기 위해 천연 식용색소의 위생 기준을 개정한다. 수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출처 이름을 수정한다. (개정 제1조)

(2) 원료 출처에 대한 인용 요건을 수정한다. (개정 제2조)

(3) 천연 착색제에 첨가제 또는 기타 첨가제 사용에 대한 출처 제한을 수정한다. (개정 제3조)

(4) 수정된 천연색소의 출처, 주성분 및 규격은 별표로 규정하고, 일부 색소의 품목, 출처, 주성분에 대한 요건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일부 새로운 규격을 추가한다. (개정 제4조)

<부표1> 천연 식용 색소 위생기준 수정 초안 내용 대조표

개정 규정	현행 규정	설명
제1조 이 기준은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이 기준은 식품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출처 이름 수정
제2조 천연 식용 색소를 추출하기 위한 용제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 에탄올, 식물성 기름 또는 기타 식품 원료 2. 가공 보조제에 대한 위생 표준에 의해 승인된 원료	제2조 천연 식용 색소를 추출하기 위한 용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물, 에탄올, 식물성 기름 등 식품 원료 2.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및 한계 사양 및 규격 기준」에서 승인된 용제 및 한계 규정	원료 출처에 인용된 조항을 수정한다.
제3조 부형제 추가거나 기타 첨가물이 첨가된 천연색소는 그 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와 한도 및 규격에 기재된 제품명 또는 기타 식용 가능한 식품원료에 한한다.	제3조 천연 식용색소는 부형제를 추가한 것 또는 기타 첨가물의 경우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 및 한계 사양 및 규격 기준」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천연 식용 색소에 부형제를 사용한 것 또는 기타 첨가물 사용에 대한 출처 제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4조 천연 식용색소의 출처, 주원료 및 규격은 부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천연 식용색소의 규격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 규격 신 / 3 ppm 이하 (As로 계산) 연 / 2 ppm 이하 중금속 / 40 ppm 이하(Pb로 계산)	이 규격의 사양 요구사항 표를 삭제하고, 부표의 비고로 옮긴다.

<「천연 식용 색소 위생기준」 수정 예고 ('22.10. 12) **>**

- 개정공고 **「천연 식용 색소 위생기준」 수정 예고**.
  預告修正天然食用色素衛生標準。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8279

Ⅲ 통관 문제 사례 관련

1. 홍콩 통관 거부사례 (10월) (2022.10.01~ 2022.10.25.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2. 대만 통관 거부사례 (10월) (2022.10.01~ 2022.10.25. 현재 기준)

○ 2022년 10월 기준, 한국산 배도라지 주스 감미료 검출(총 1건)의 위반 사례 발생

분류	발표일자	제품	원산지	문제 사유	내용	수입 물량	조치 내용
가공	10.18 (접수일 8.25)	배도라지 주스	한국	감미료 사카린 검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제한 및 사용기준」 및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에 부합하지 않음 허용치: - 검출치: 0.13g/kg	2,640.00 kg	반품 또는 폐기